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2014년 9월 23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상 수

# 목 차


Ⅰ. 제안 개요 ---------- 1

Ⅱ. 세입·세출 결산 ---------- 2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1) 부서별 세입 현황

(2) 부문별 세입 현황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1)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2)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3) 집행율 저조 사업 현황

(4) 예산 전용 현황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 주차장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Ⅲ. 예비비 지출 ---------- 8

1. 일반회계

2. 주차장 특별회계

Ⅳ. 기금 결산 ---------- 9

Ⅴ. 검토 의견 ---------- 10

# 2013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Ⅰ 제안 개요

### □ 안 건 명

○ 2013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회부일자 : 2014년 9월 10일 (수)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Ⅱ 세입 · 세출예산 결산

##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1)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 원)

| 부 서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징수율 | |
|---|---|---|---|---|---|
| | | | | 현액대비 | 결정액대비 |
| 합 계 | 9,698,970,000 | 27,580,972,200 | 11,429,532,450 | 117.8% | 41.4% |
| 교통행정과 | 3,163,802,000 | 13,688,950,680 | 3,082,183,140 | 97.4% | 22.5% |
| 교통지도과 | 34,468,000 | 280,110,710 | 34,446,240 | 99.9% | 12.3% |
| 건설관리과 | 4,180,437,000 | 7,680,779,060 | 5,833,402,490 | 139.5% | 75.9% |
| 토 목 과 | 676,000,000 | 742,434,670 | 672,461,940 | 99.5% | 90.6% |
| 치 수 과 | 1,331,263,000 | 1,489,659,190 | 1,446,756,340 | 108.7% | 97.1% |
| 지 적 과 | 313,000,000 | 3,699,037,890 | 360,282,300 | 115.1% | 9.7% |

○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75억 8,097만 2,2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14억 2,953만 2,450원으로 구(區) 전체 세입의 2.6%(4,440억 8,335만 4,942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 예산현액 대비 117.8%로 2012년도 111.9%에 비하여 5.9% 증가

► 징수결정액 대비 41.4%로 2012년도 34.2%에 비하여 7.2% 증가

○ 미납액은 161억 5,143만 9,750원이며, 15억 7,777만 5,430원은 결손처분하고 145억 7,366만 4,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가) | 결산액 | | 차인잔액 (나)-(다) |
|---|---|---|---|---|
| | | 세입 (나) | 세출 (다) | |
| 합 계 | 436,512,109,150 | 444,083,354,942 | 347,871,683,747 | 96,211,671,195 |
| 일 반 회 계 | 370,035,899,150 | 376,479,087,311 | 333,488,548,029 | 42,990,539,282 |
| 특 별 회 계 | 66,476,210,000 | 67,604,267,631 | 14,383,135,718 | 53,221,131,913 |
| 의료보호기금 | 460,704,000 | 419,147,003 | 378,479,993 | 40,667,010 |
| 주 차 장 | 60,741,175,000 | 59,469,803,510 | 9,600,609,010 | 49,869,194,500 |
| 마포농수산물시장 | 5,274,331,000 | 7,715,317,118 | 4,404,046,715 | 3,311,270,403 |

### (2) 부문별 세입 현황

(단위 : 원)

| 과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
|---|---|---|---|---|---|---|
| | | | | | 현액대비 | 결정액대비 |
| 합계 | 9,698,970,000 | 27,580,972,200 | 11,429,532,450 | 16,151,439,750 | 117.8% | 41.4% |
| 임대료 | 23,419,000 | 27,213,830 | 26,771,440 | 442,390 | 114.3% | 98.4% |
| 사용료 | 2,282,565,000 | 3,904,688,060 | 3,789,831,450 | 114,856,610 | 166.0% | 97.1% |
| 징수교부금 수입 | 2,024,543,000 | 2,170,544,330 | 2,170,544,330 | - | 107.2% | 100.0% |
| 일반부담금 | - | 44,790,000 | 44,790,000 | - | - | 100.0% |
| 변상금및위약금 | - | 738,345,990 | 607,350,290 | 130,995,700 | - | 82.3% |
| 과태료 | 689,140,000 | 1,882,121,290 | 603,857,970 | 1,278,263,320 | 87.6% | 32.1% |
|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50,000,000 | 327,282,520 | 57,379,120 | 269,903,400 | 114.8% | 17.5% |
| 그외수입 | 630,453,000 | 259,667,360 | 150,931,360 | 108,736,000 | 23.9% | 58.1% |
| 지난년도 수입 | 2,166,558,000 | 16,389,013,320 | 2,140,770,990 | 14,248,242,330 | 98.8% | 13.1% |
| 시·도비 보조금 등 | 1,832,292,000 | 1,837,305,500 | 1,837,305,500 | - | 100.3% | 100.0% |

##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1)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합 계 | 19,430,570,830 | 16,074,595,340 | 1,486,855,820 | 1,869,119,670 | 82.7% |
| 교통행정과 | 885,918,000 | 789,700,850 | 5,883,620 | 90,333,530 | 89.1% |
| 교통지도과 | 67,112,000 | 58,824,220 | - | 8,287,780 | 87.7% |
| 건설관리과 | 1,025,821,000 | 994,564,540 | - | 31,256,460 | 97.0% |
| 토목과 | 9,820,677,830 | 7,696,192,340 | 1,480,972,200 | 643,513,290 | 78.4% |
| 치수과 | 7,289,749,000 | 6,266,718,120 | - | 1,023,030,880 | 86.0% |
| 지적과 | 341,293,000 | 268,595,270 | - | 72,697,730 | 78.7% |

○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711만 1,83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3,472만 8천원을 포함한 194억 3,057만 830원이며, 160억 7,459만 5,340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율은 82.7%로 2012년 88.3% 대비 5.6% 감소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은 14억 8,685만 5,820원이 되겠음

## (2)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집행잔액 | 원인별현황 | | | |
|---|---|---|---|---|---|
| |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 예산절감 (유보액) |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 보조금 집행잔액 |
| 합 계 | 1,869,119,670 | 55,527,530 | 202,157,000 | 1,274,422,944 | 337,012,196 |
| 교통행정과 | 90,333,530 | - | 12,731,000 | 70,321,294 | 7,281,236 |
| 교통지도과 | 8,287,780 | - | 708,000 | 7,579,780 | - |
| 건설관리과 | 31,256,460 | - | 2,607,000 | 28,649,460 | - |
| 토목과 | 643,513,290 | - | 137,195,000 | 415,288,010 | 91,030,280 |
| 치수과 | 1,023,030,880 | - | 42,712,000 | 741,618,200 | 238,700,680 |
| 지적과 | 72,697,730 | 55,527,530 | 6,204,000 | 10,966,200 | - |

○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이 68.2%로 가장 높고, 보조금 집행잔액 18.0%, 예산절감(유보액) 10.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 순으로 발생하였음.

## (3) 집행율 저조 사업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련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 32,940,000 | 17,350,120 | 15,589,880 | 52.7% |
| | 승용차요일제참여활성화 (사무관리비) | 25,150,000 | 11,530,500 | 13,619,500 | 45.8% |
| 교통지도과 | 법규위반차량운행질서확립 (공공운영비) | 13,500,000 | 6,959,020 | 6,540,980 | 51.5% |
| 토 목 과 |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 (시설비) | 49,942,010 | 19,420,000 | 30,522,010 | 38.9% |
| 치 수 과 | 수문정밀점검 (시설비) | 219,000,000 | 104,638,000 | 114,362,000 | 47.8% |
| 지 적 과 | 부동산민원서비스향상 (일반운영비) | 13,471,000 | 5,500,900 | 7,970,100 | 40.8% |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지적과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율이 저조하며, 치수과 수문정밀점검 시설비는 1억 1,43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47.8%로 낙찰율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율이 높고, 토목과는 상수동19~하중동87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협의보상 지연으로 이월된 보상비 집행잔액임.

## (4)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원)

| 과목 | | | 예산액 | 전용금액 | | 사유 |
|---|---|---|---|---|---|---|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 감액 | 증액 | |
| 합계 | | | 47,071,000 | 2,000,000 | 2,000,000 | |
| 지적과 |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 | 사무관리비 | 15,471,000 | 2,000,000 | - | 부동산민원증명 발급용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고장으로 신규 구매 |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1,600,000 | - | 2,000,000 | |

##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원)

| 부서명 | 세부사업 | 예산현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
|---|---|---|---|---|---|
| 토목과 (명시이월)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매수(시설비) | 1,350,000,000 | - | 1,350,000,000 | - |
| 교통행정과 (사고이월) | 체납징수활동 강화 (포상금) | 75,454,000 | 69,570,380 | 5,883,620 | - |
| 토목과 (사고이월) |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 319,790,820 | 169,790,000 | 130,972,200 | 19,028,620 |

○ 명시이월

► <토목과> 연남동 361-32~375-10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13년 예산집행이 어려워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13억 5,000만원이 이월됨

○ 사고이월

► <토목과> 제설대책 기간이 2014.3.15 종료함에 따라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도로제설 유지사업비 1억 3,097만 2,200원 이월됨

► <교통행정과> 체납 과태료 자동차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수수료 2013년 11월~12월분에 대한 정산이 늦어져 포상금 이월됨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3 주차장 특별회계

###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과목명)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징수율 | |
|---|---|---|---|---|---|
| | | | | 현액대비 | 결정액대비 |
| 합 계 | 60,741,175,000 | 76,025,436,930 | 59,469,803,510 | 97.9% | 78.2% |
| 교통행정과 | 406,612,000 | 478,381,133 | 478,381,133 | 117.7% | 100.0% |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 39,617,000 | 68,186,133 | 68,186,133 | 172.1% | 100.0% |
| 조정교부금 | 22,320,000 | 22,320,000 | 22,320,000 | 100.0% | 100.0% |
| 시·도비보조금등 | 344,675,000 | 387,875,000 | 387,875,000 | 112.5% | 100.0% |
| 교통지도과 | 60,334,563,000 | 75,547,055,797 | 58,991,422,377 | 97.8% | 78.1% |
| 주차요금수입 | 7,147,751,000 | 7,188,129,050 | 7,188,129,050 | 100.6% | 100.0% |
| 기타사업수입 | 301,937,000 | 248,080,130 | 248,080,130 | 82.2% | 1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 800,000,000 | 1,239,716,479 | 1,239,716,479 | 155.0% | 100.0% |
| 순세계잉여금 | 44,717,527,000 | 44,717,527,738 | 44,717,527,738 | 100.0% | 100.0% |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 600,000 | 600,000 | 600,000 | 100.0% | 100.0% |
| 과태료 | 3,456,000,000 | 4,194,095,330 | 2,948,024,500 | 85.3% | 70.3% |
| 체납처분수입 | 6,375,000 | 2,125,000 | 2,125,000 | 33.3% | 100.0% |
| 그외수입 | 104,806,000 | 120,128,530 | 120,128,530 | 114.6% | 100.0% |
| 지난년도수입 | 3,789,567,000 | 17,826,653,540 | 2,517,090,950 | 66.4% | 14.1% |
| 시·도비보조금등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 | 100.0% |

○ 2013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60억 2,543만 7천원, 수납액은 594억 6,980만 4천원으로 징수율은 78.2%이며, 전년도 징수율 72.9% 대비 5.3%(58억 5,177만 9천원) 증가하였음

### (2) 세출결산

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합 계 | 60,741,175,000 | 9,600,609,010 | 51,140,565,990 | 15.8% |
| 교통행정과 | 51,173,455,000 | 1,253,910,720 | 49,919,544,280 | 2.5% |
| 교통지도과 | 9,567,720,000 | 8,346,698,290 | 1,221,021,710 | 87.2% |

○ 교통행정과 예산 집행율이 2.5%로 저조한 주된 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499억 6,355만 7천원의 예비비 중 3억 124만 7천원을 지출하여 496억 6,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집 행 잔 액 | 원인별 현황 | | | |
|---|---|---|---|---|---|
| | | 예산절감 |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 보조금 집행잔액 | 예비비 |
| 합 계 | 51,140,565,990 | 26,410,000 | 1,352,522,750 | 99,323,240 | 49,662,310,000 |
| 교통행정과 | 49,919,544,280 | 26,410,000 | 131,501,040 | 99,323,240 | 49,662,310,000 |
| 교통지도과 | 1,221,021,710 | - | 1,221,021,710 | - | - |

○ 주차장특별회계는 511억 4,056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예비비가 97.1%인 496억 6,231만원으로 가장 높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6%, 보조금 집행잔액 0.2%, 예산절감이 0.1%임

다. 집행률 저조 사업 (단위 : 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교통행정과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사운영비)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20.0% |
| | 주택가수요위주의주차장 건설(자산및물품취득비) | 6,000,000 | - | 6,000,000 | 0.0% |
| 교통지도과 |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사무관리비) | 29,190,000 | 13,054,970 | 16,135,030 | 44.7% |
| |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공공운영비) | 741,840,000 | 502,748,560 | 239,091,440 | 67.8% |

○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2억 3,909만 1,440원의 집행잔액(집행율 67.8%)이 발생하여 전년도 2억 6,527만 3,430원(집행율 67.5%)에 이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공공운영비) 현황 (단위 : 원)

| 구분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2013년 | 741,840,000 | 502,748,560 | 239,091,440 | 67.8% |
| 2012년 | 816,560,000 | 551,286,570 | 265,273,430 | 67.5% |
| 증감 | △74,750,000 | △48,538,010 | △26,181,990 | 0.3% |

# Ⅲ 예비비 지출

## 1 일반회계

(단위 : 원)

| 부서 | 세부사업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예비비지출 사유 |
|---|---|---|---|---|---|
| 합 계 | | 234,728,000 | 223,372,540 | 11,355,460 | |
| 토목과 | 도로제설 유지 (재료비) | 140,000,000 | 140,000,000 | 0 | 강설 등으로 제설재 사용량 급증함에 따라 제설재 확보 |
| |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 34,728,000 | 34,727,180 | 820 | 2012/2013년도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부족 |
| |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공공운영비) | 60,000,000 | 48,645,360 | 11,354,640 |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 |

○ 일반회계 예비비는 토목과 도로제설 유지 사업 등 2억 3,47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337만 2,540원이 지출되고 1,135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원)

| 부서 (세부사업)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예비비지출 사유 |
|---|---|---|---|---|
| 합계 | 301,247,000 | 285,314,210 | 15,932,790 | |
| 교통행정과 | 221,770,000 | 205,837,210 | 15,932,790 | |
|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시설비) | 21,770,000 | 19,481,500 | 2,288,500 |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
|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시설비) | 200,000,000 | 186,355,710 | 13,644,290 | 신촌상가 철거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 교통지도과 | 79,477,000 | 79,477,000 | | 홍대 노상주차장 보도블럭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 |
| 주차장 관리 (시설비) | | | | |

○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와 신촌상가 임시주차장 건설, 홍대 노상 주차장 보수 공사로 2억 8,531만 4,210원을 지출하고 1,593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Ⅳ 기금 결산

## 1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 : 원)

| 부서명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계 ㉭=㉰-㉱ | 조성액 ㉰ | 사용액 ㉱ | |
| 토목과 | 913,632,840 | △3,953,234 | 674,099,616 | 678,052,850 | 909,679,606 |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하며 기금의 재원은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95만 3,234원이 감소한 9억 967만 9,606원이 조성되었으며, 수입은 이자 3,320만 1,266원, 일반부담금 6억 4,089만 8,350원, 예치금 회수 9억 1,363만 2,840원이고, 지출은 시설비 6억 7,805만 2,850원, 예치금 9억 967만 9,606원이 되겠음

※ 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 수 입 | | 지 출 | |
|---|---|---|---|
| 합계 | 1,587,732,456 | 합계 | 1,587,732,456 |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3,201,266 | 시설비 | 678,052,850 |
| 일반 부담금 | 640,898,350 | 예치금 | 909,679,606 |
| 예치금 회수 | 913,632,840 | | |

○ 2013년도 현재 마포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75억 9,349만 2,48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7억 3,648만 1,436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7억 139만 1,362원, 차인잔액은 296억 2,858만 2,558원이 되겠음

※ 마포구 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 기금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계 ㉭=㉰-㉱ | 조성액 ㉰ | 사용액 ㉱ | |
| 15종 | 37,593,492,484 | △7,964,909,926 | 10,736,481,436 | 18,701,391,362 | 29,628,582,558 |

# V 검토의견

○ 2013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 결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입징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와같은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앞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마련,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재조정,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1) 세입 현황

❍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수납액은 114억 2,953만 2,450원으로 전년도 95억 2,525만 6,370원 대비 19억 427만 6,080원(19.9%)이 증가하였음

► 마포구 전체 수납액은 전년 대비 578억 9,886만 4,757원이 증가한 4,440억 8,335만 4,942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764억 7,908만 7,311원(84.8%), 특별회계는 676억 426만 7,631원(15.2%)이 되겠음

❍ 최근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확대 등 복지비 증가로 구(區) 재정 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13년 46.1%이던 자립도가 올해는 32.8%로 하락하여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 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 최근 재정 자립도 (단위 : 원)

|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재정자립도 | 49.3% (9위) | 49.1% (9위) | 46.1% (9위) | 32.8% (8위) |

## (2) 세입 예산 편성

○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재원 조달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반회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국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 12건 10억 1,549만 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 세입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전례 답습적인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정확한 분석 및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부서별 세입 미편성 후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단위 : 원)

| 부서명 | 비고 | 금액 | 비고 |
|---|---|---|---|
| 합계 | 12건 | 1,015,495,920 | |
| 교통행정과 | 1건 | 50,093,910 | |
| 교통지도과 | 1건 | 1,516,900 | |
| 건설관리과 | 3건 | 743,373,950 | |
| 토 목 과 | 1건 | 49,248,800 | |
| 치 수 과 | 3건 | 115,373,600 | |
| 지 적 과 | 3건 | 55,888,760 | |

## (3) 체납 징수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61억 5,143만 9,750원이며 그 중 "지난년도 수입" 이 총 미수납액의 88.2%인 142억 4,824만원으로 가장 크지만 징수율은 평균 13.1%에 불과하여 징수율이 매우 낮음

※ 지난년도 수입 수납 현황 (단위 : 원)

| 과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징수율 | |
|---|---|---|---|---|---|
| | | | | 현액대비 | 징수율대비 |
| 합 계 | 2,166,558,000 | 16,389,013,320 | 2,140,770,990 | 98.8% | 13.1% |
| 교통행정과 | 1,649,630,000 | 10,953,621,760 | 1,580,049,990 | 95.8% | 14.4% |
| 교통지도과 | 18,928,000 | 247,356,170 | 17,421,000 | 92.0% | 7.0% |
| 건설관리과 | 275,000,000 | 1,789,826,880 | 217,306,790 | 79.0% | 12.1% |
| 토 목 과 | - | 51,038,800 | 49,248,800 | - | 96.5% |
| 치 수 과 | - | 23,378,630 | 15,914,580 | - | 68.1% |
| 지 적 과 | 223,000,000 | 3,323,791,080 | 260,829,830 | 117.0% | 7.8% |

○ 따라서,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하락으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증가하여 구(區)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강화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원)

| 과 목 | 결손처분액 | 사 유 별 | | | |
|---|---|---|---|---|---|
| | | 무재산 | 행방불명 | 시효소멸 | 기 타 |
| 합 계 | 1,577,775,430 | 987,201,670 | 366,457,560 | 222,010,100 | 2,106,100 |
| 도로사용료 | 1,484,120 | - | - | 1,484,120 | - |
| 변상금및위약금 | 926,400 | - | - | 926,400 | - |
| 과태료 | 2,743,300 | 637,200 | - | - | 2,106,100 |
| 지난년도수입 | 1,572,621,610 | 986,564,470 | 366,457,560 | 219,599,580 | - |

##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1) 예산 불용

○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집행율은 82.7%로 전년도 88.3%에 비하여 5.6%가 감소하였으며, 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지적과는 집행율이 전년대비 1.9%~8.9% 감소하였으나, 교통행정과는 1.4%, 건설관리과는 0.7%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집행율 비교 (단위 : 원)

| 구분 | 계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치수과 | 지적과 |
|---|---|---|---|---|---|---|---|
| 2013년 | 82.7% | 89.1% | 87.7% | 97.0% | 78.4% | 86.0% | 78.7% |
| 2012년 | 88.3% | 87.7% | 89.6% | 96.2% | 85.2% | 91.2% | 87.6% |
| 증감 | △5.6% | 1.4% | △1.9% | 0.7% | △6.8% | △5.2% | △8.9% |

○ 또한, 건설교통국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으로 발생한 5,552만 7,530원 전액이 지적과에서 발생하였고 그중 53.9%인 2,997만원이 사무관리비인 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 지 불용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사업부서의 특성상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불용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계획의 부적정 또는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고 있음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예산전용

○ 지적과 부동산민원증명 발급용 수입증지 인증계기 고장에 따른 신규 구매 비용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은 예산이 성립한 후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 이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형식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전용은 가급적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전용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원)

| 구분 | 부서 | 건수 | 금액 | 비고 |
|---|---|---|---|---|
| 2013년 | 지적과 | 1 | 2,000,000 | |
| 2012년 | 지적과 | 1 | 2,279,000 | |

## (3) 예산 이월

○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건 13억 5천만원, 사고이월 2건 1억 3,685만 5,820원으로,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용되나,

○ 사업 지체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기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원)

| 구분 | 합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비고 |
|---|---|---|---|---|
| 2013년 | 1,486,855,820 | 1,350,000,000 | 136,855,820 | 명시 1건, 사고 2건 |
| 2012년 | 447,111,830 | 0 | 447,111,830 | 명시 0건, 사고 5건 |

## 3 주차장 특별회계

### 1) 세입 결산

○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은 2010년 63.0%, 2011년 68.6%, 2012년 72.9%, 2013년 78.2%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세입 징수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과목 중 '과태료 수입' 징수율은 70.3%, '지난연도 수입' 은 14.1%로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연도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징수율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징수율 | 비고 |
|---|---|---|---|---|
| 2010회계연도 | 63,504,703 | 40,004,426 | 63.0% | |
| 2011회계연도 | 70,200,433 | 48,169,939 | 68.6% | |
| 2012회계연도 | 73,526,885 | 53,618,025 | 72.9% | |
| 2013회계연도 | 76,025,437 | 59,469,804 | 78.2% | |

### 2) 세출 결산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과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년 막대한 예산이 누적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아직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28,984,634 | 33,846,030 | 33,384,671 |

○ 또한, 부서별로 불용율이 높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불용율이 높으므로 사업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4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당해 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제설재 구입 등 3건 2억 2,33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소의초등학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3건 2억 8,531만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 지출 사유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 한 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기금 조례 정비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 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 이 있으며,

○ 자체기금은 설치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종기일 이전에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체기금인「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역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